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69 호 2019. 4. 11.(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67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69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70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425호[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6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19. 4. 4.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우수관로 매설, 진출입로 개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산하동 932-60번지 및 산하동 932-61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3m²
 - 나. 기 간 - 2019. 04. 08. ~ 2023.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기사이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 38(신정동)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6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23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788-1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서 길 56-6	2019-04-11	가대동 서쪽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 구 68B 1-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	2019-04-11	명촌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법정동인 명촌동의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8-02-29
3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406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만 석골길 44	2019-04-11	옛날 만석꾼이 살았던 곳이라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 건의에 의해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8-02-29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93-1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 7길 23	2019-04-11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46-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 7길 77	2019-04-11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93-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 7길 23-1	2019-04-11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7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호계7길 73	호계동 478-6	2019. 4. 11	건축물멸실
호계7길 23	호계동 693-11	2019. 4. 11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11.**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9 - 425호

울산광역시 복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꽃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 내지 제2조)
- 나. 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및 확산 지원
 - 1) 조성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2) 확산 지원(안 제5조)
-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내지 제9조)
 - 1)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 2)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7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 전화번호 : 052-241-8071, 팩스번호 : 052-241-805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꽃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꽃도시 조성사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꽃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꽃가꾸기”란 주택, 상가, 마을 등의 공간에 꽃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꽃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동산, 꽃거리, 꽃길 조성
2. 꽃도시 조성·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3. 꽃도시 조성 캠페인, 콘테스트
4. 그 밖에 꽃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꽃도시 조성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꽃도시 조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꽃단지 조성

2. 구민대상 교육을 통한 꽃도시 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꽃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꽃가꾸기에 관한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공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꽃도시 조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디자인, 공원녹지, 꽃도시 조성, 주택 등의 업무 담당과장 4명 이내
 2. 조경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내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이내
-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꽃도시조경주사가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1. 꽃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2. 꽃도시 조성사업 시행계획
3. 꽃가꾸기에 관한 콘테스트 등 심의
4. 그 밖에 꽃도시 조성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